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령 제194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클로로포름 등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비소와 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질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질오염물질에서 누락되었던 벤젠 및 사염화탄소 등 일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하며,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무실에 대하여는 기타 수질오염원의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페놀류등 오염물질

항목	지역구분	청정	가	나	특례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mg/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mg/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mg/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15. 1, 2-디클로로에탄

16. 클로로포름

별표 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30호 내지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대장균군

30. 유기인화합물

31. 6가크롬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폴리크로리네이트드비페닐

35. 벤젠

36. 사염화탄소

37. 디클로로메탄

38. 1, 1-디클로로에틸렌

39. 1, 2-디클로로에탄

40. 클로로포름

별표 2에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별표 3의2 제3호 가목의 규모란 중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면적 200㎡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중 비교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지역구분	청정	가	나	특례
용해성철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mg/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mg/l)		0.5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mg/l)		불검출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mg/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mg/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연)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mg/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mg/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mg/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mg/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ℓ)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mg/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mg/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mg/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mg/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mg/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mg/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2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취지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787호, 2005년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9호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대상을 규정함.

- (1)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2)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방지설비 등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함.
- (3)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

- (1) 선박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 (2) 대기오염방지설비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되도록 기술기준을 규정함.
- (3)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규제되는 소형의 디젤기관을 규정함.

- (1) 국내 항해하는 소형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
- (2)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서 배출을 규제하는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으로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규제토록 함.

(3) 선박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대기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선박 설치전 검사를 받도록 함.

-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공장에서 제작되고 검사가 복잡하므로 선박에 설치하여 검사할 때 검사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2)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을 선박에 설치 전에 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경우 설치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에 대해 선박 설치전에 검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검사가 용이토록 함.

환경부령 제195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법률 제7293호, 2004. 12. 31.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설정(제4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소음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를 굴삭기·브레이커·발전기 등 9종으로 정함.

나. 시·도지사의 행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폭 이양(제9조·제12조 및 제17조 등)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금까지 행사하여온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등을 대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다. 확성기에 의한 생활소음 중 규제제외 대상의 명확화(제29조의2제2항제1호)

종전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확성기에 의한 생활소음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비상호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함.

라. 특정공사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등(제33조제5항 내지 제7항 신설)

특정공사의 공사장 방음시설에 대하여 방음벽의 높이는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설치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 등으로 정하며, 방음시설의 사전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별도의 방음대책을 이동식 방음벽시설 또는 부분방음시설의 사용 등으로 정함.

마. 관리지역 내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기준 완화(별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의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5데시벨 완화하여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함.

바.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별표 23 제2호나목)

공사장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명령이나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추가하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의 범위(안 제9조의2제2호)

종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영업장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영업장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적정관리가 되도록 함.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안 제23조제3항제4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의 범위에서 종전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함.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다. 다이옥신 측정기관 추가(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을 추가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함.

라.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처리기준 완화(안 별표 4)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폐유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잔류탄소는 2퍼센트 이하에서 4퍼센트 이하로, 수분 및 침전물은 0.5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회분은 0.5퍼센트 이하에서 1.0퍼센트 이하로 각각 조정함.

환경부령 제193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중 “폐전주”를 “폐전주(폐전주 철거시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제6조의4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다목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다목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라목 단서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며,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마목(종전의 다목)중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한다.

- 가. 국립환경과학원
- 나. 유역(지방)환경청

제24조의2제1항제2호다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7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사용이 종료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6) 본문중 “사료관리법”을 각각 “「사료관리법」”으로 하며,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만,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를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소멸화·탄화·소화 또는 부속도 생산 등 재활용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협잡물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별표 4 제4호가목(2)중 “폐기물은”을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으로 하고, 동호다목(4) 단서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라목(2)(나)①④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목(2)(라) 단서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하며, 동목(2)(자)③ 단서중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목(2)(자)③④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목(2)(자)③④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2)(차)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이 종료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을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씨로 하여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4 제6호다목(2)(나)①④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목(2)(나)①에 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2)(나)④⑦중 “2퍼센트 이하”를 “4퍼센트 이하”로, “0.03퍼센트 이하”를 “0.15퍼센트 이하”로 하며, 동목(2)(나)④⑧중 “0.5퍼센트 이하”를 “1.0퍼센트 이하”로, “0.02퍼센트 이하”를 “0.5퍼센트 이하,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하”로 하며, 동목(2)(나)④⑨중 “0.5퍼센트 이하”를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㉞ 유화(乳化)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화방법: 정제연료유 등에 적당량의 물과 유화제(乳化劑) 등을 첨가·혼합하여 기계적·화학적·초음파 방법 또는 이상의 방법들을 병용하여 유화시켜야 한다.

○ 유화된 입자의 크기: 유화된 입자의 크기는 미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 안정성: 유화정제연료유는 안정성을 가지고 균일한 유화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함수율: 유화정제연료유의 함수율은 부피비율로 15퍼센트 이하하여야 한다.

○ 유화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배관 등을 부식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비교: “유화”라 함은 어떤 액체 중에서 그것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하며, “유화정제연료유”란 악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첨가하여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첨가하여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

별표 4 제7호가목(1)중 “장시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나목(1) 단서중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목(5)중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다목(1)(다)②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라) 단서중 “치수”를 “용량과 치수”로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합성수지류 전용 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한다.

별표 6 제2호마목(1)(가)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개별시설

○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내부용적의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내부용적의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2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증발장치: 응축 또는 폐가스소각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시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의 폐유를 섭씨 100도 이상 가열하여 잔류수분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또는 발열량 8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보일러

- 반응조: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약품저장조: 내부용적 합계 4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량조정조: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전처리여과장치: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원심분리기: 시간당 처리능력 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혼합장치: 교반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합계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

별표 6의2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정제연료유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의 종류·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7 제1호가목(3)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나목(1)(카)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로 하며, 동호마목(1)의 제목중 “소멸화시설”을 “소멸화·부속토생산 시설”로 하고, 동목(1)(나)중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목(1)(다)중 “비료관리법시행령”을 “비료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2호나목(2)(마)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2)(마)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라) 부속토생산 시설은 별표 4 제3호라목(5)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속토생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표 제2호가목(1)(가)② 및 ⑦ 단서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2호가목(4)(가)의 제목 및 동목(4)(가)①중 “퇴비화시설”을 각각 “퇴비화·부속토생산 시설”로 하고, 동목(4)(가)②중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하며, 동목(4)(가)③중 “퇴비화 과정에서 선별된 이물질 등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부속토생산 및 소멸·소화 과정에서 선별된 협잡물 또는 잔재물”로 하고, 동호나목(2)(가)「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제3호 및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목(2)(나)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동목(2)(다) 후단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환경정

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1의2 제2호가목중 “무기성오니(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무기성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다목(2)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목(3)중 “50퍼센트”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로 하고, 동목(5)중 “별표 8 제2호나목(2)(자)”를 “별표 8 제2호나목(2)(차)”로 하며, 동표 제4호의2 본문중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4호의11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의12중 “폐지동차”를 “폐지동차(폐지동차 파쇄물을 포함한다)”로, “파쇄하여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를 “파쇄·용융·추출 등의 방법으로 금속·플라스틱·유리 등을 회수하는 경우 또는 파쇄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잔재물에서 유기금속을 회수하는 경우”로 하고, 동표 제4호의13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의18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활성탄을 제조”를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으로 하고, 동표에 제4호의19 및 제4호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19. 석산에서 채석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수분 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채석지역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원료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로 가공하는 경우

4의20. 음식물류폐기물을 탄화시켜 흡착제를 제조하는 경우

별표 12의 비고 제1호중 “제7호, 제46조제3항”을 “제7호”로 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3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2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3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중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을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6항제2호중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6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단서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제44조제4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5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7호중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4호의2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의3중 “비료관리법시행규칙”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동표 제3호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표 제4호중 “혈액관리법”을 “「혈액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5호중 “검역법”을 “「검역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동표 제6호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10

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11호중 “행형법”을 “「행형법」”으로 하며, 동표 제12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군통합병원령”을 “「군통합병원령」”으로 하며, 동표 제14호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별표 3 06-01-01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7의2의 비고란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중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목(3)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동목(4)중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호나목(1)중 “악취방지법”을 “「악취방지법」”으로 하며, 동목(2)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다목(1)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악취방지법”을 “「악취방지법」”으로 하며, 동목(2)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목(3)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0의 비고란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3 제8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다목(1)중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

규칙”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호라목(1) 및 동호사목(1)중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아목(1)중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3) 및 동표 제4호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환경부령 제189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5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법률 제7562호, 2005. 5. 31. 공포, 2006.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시간 단축

(제5조제2항)

유사한 교과목을 통합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하여 2시간 단축함.

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일부 삭제
(현행 제7조제2항제6호 삭제)

실태조사 결과 검출률이 낮고 실외공기와 유사한 농도를 가진 1,4-디클로로벤젠은 관리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서 이를 삭제함.

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안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인 포름알데히드·벤젠 등에 관하여 포름알데히드의 경우에는 1입방미터 당 210마이크로그램 이하, 벤젠의 경우에는 1입방미터 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 등으로 각 권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일몰제의 적용 폐지(현행 부칙 제2조 삭제)

향후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관한 제10조 및 별표 5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종전규칙의 부칙을 삭제함.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동법시행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8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령 제156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포름알데히드 $210\mu\text{g}/\text{m}^3$ 이하
2. 벤젠 $30\mu\text{g}/\text{m}^3$ 이하
3. 톨루엔 $1,000\mu\text{g}/\text{m}^3$ 이하
4. 에틸벤젠 $360\mu\text{g}/\text{m}^3$ 이하
5. 자일렌 $700\mu\text{g}/\text{m}^3$ 이하
6. 스티렌 $300\mu\text{g}/\text{m}^3$ 이하 

「월간 ‘환경기술인」」 홍보광고 안내

- 광고 SIZE: 4×6 배판
- 문의전화: (02)852-2291
- 담당 : 김기섭 광고팀장(019-436-3621)